

가입·탈퇴 규정

2022. 7. 8. 개정
2022. 02. 10. 개정
2021. 12. 06. 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정관 제6조 및 제10조 제3항에 따른 종목단체의 광진구체육회 (이하 “체육회” 라 한다) 가입 및 탈퇴의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가입”은 정관 제8조에서 정한 권리 및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에 동의하여 체육회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.
2. “탈퇴”는 체육회가 회원으로 가입을 승인한 종목단체가 정관에서 정한 회원관계에서 이탈하는 것을 말한다.
3. “올림픽, 아시아게임, 전국체전, 대축전 종목”은 제8조 등급 및 가입심의 당시 대회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종목을 말한다.

제3조(가입신청서류) ① 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종목단체는 매 회계연도 1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가입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
2. 단체 소개서(연혁, 종목설명, 활동개요, 조직 등)
3. 임원 명단(개인별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포함)
4. 단체장의 신원진술서(별지 제2호 서식)
5. 단체의 정관 및 제 규정
6. 회원가입을 의결한 대의원총회 회의록

7. 경기개요 및 경기규칙
 8. 선수 및 팀(스포츠클럽 포함) 등록 현황
 9. 클럽 및 산하연맹체 설치 현황
 10. 경기대회 및 동호인대회 개최 실적
 11. 전년도 사업실적 및 해당년도 사업계획서
 12. 전년도 수지결산서 및 해당년도 수지예산서
 13. 당해 단체의 국제경기연맹 및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중앙경기단체에 관한 참고자료
- ② 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연맹이 없는 종목 단체는 자료의 제출을 예외로 한다.

제4조(정회원단체의 가입요건) ① 체육회에 정회원단체로 가입하고자 하는 종목단체는

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.

1. 광진구를 대표하는 해당 종목 유일의 단체일 것
 2. 종목이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의 요건을 갖추었을 것
 3. 광진구를 통할하는 권위와 지도력이 인정되는 종목단체일 것
 4. 5개 클럽, 회원 150명 이상이 가입되어 있을 것
 5. 종목단체가 주최하는 대회가 연 1회 이상일 것
 6. 해당 종목의 보급도와 경기력 발전성이 인정될 것
 7. 체육회의 정관 및 ‘회원종목단체규정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목단체의 정관이 제정되어 있을 것
- ② 올림픽, 아시안게임, 전국체육대회,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정식종목은 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.
- ③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될지라도 체육회가 정회원단체로 가입시킬 필요성을 충분히

인정하여야 한다.

제4조의2(동체육회의 가입요건) ① 체육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동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.

1. 광진구를 대표하는 해당 동체육회 유일의 단체일 것.
2. 동체육회가 주최하는 대회나 행사가 연 1회 이상 일 것.
3. 위 제2호와 관련하여 동체육회가 주최하는 대회 및 행사가 진행되어질 수 있는 50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.
4. 체육회의 정관 및 ‘동체육회규정’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동체육회의 규정이 제정되어 있을 것. <제목개정 2022.7.8.>

제5조(준회원단체의 가입요건) ① 체육회에 준회원단체로 가입하고자 하는 종목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.

1. 광진구를 대표하는 해당 종목 유일의 단체일 것
 2. 종목이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의 요건을 갖추었을 것
 3. 광진구를 통할하는 권위와 지도력이 인정되는 종목단체일 것
 4. 5개 클럽, 회원 100명 이상이 가입되어 있을 것
 5. 종목단체가 주최하는 대회가 연 1회 이상일 것
 6. 해당 종목의 보급도와 경기력 발전성이 인정될 것
 7. 체육회의 정관 및 ‘회원종목단체규정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목단체의 정관이 제정되어 있을 것
- ② 올림픽, 아시안게임, 전국체육대회,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정식종목은 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.

③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될지라도 체육회가 준회원단체로 가입시킬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여야 한다.

제6조(인정단체의 가입요건) ① 체육회에 인정단체로 가입하고자 하는 종목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.

1. 광진구를 대표하는 해당 종목 유일의 단체일 것
2. 종목이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의 요건을 갖추었을 것
3. 서울시를 통할하는 권위와 지도력이 인정되는 종목단체일 것
4. 3개 클럽, 회원 60명 이상이 가입되어 있을 것
5. 종목단체가 주최하는 대회가 연 1회 이상일 것
6. 해당 종목의 보급도와 경기력 발전성이 인정될 것
7. 체육회의 정관 및 ‘회원종목단체규정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목단체의 정관이 제정되어 있을 것

② 올림픽, 아시안게임, 전국체육대회,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정식종목은 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.

③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될지라도 체육회가 인정단체로 가입시킬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여야 한다.

제7조(심의절차) ①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심의절차는 정관 제10조에 따른다.

② 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단체는 인정단체로 가입하여야 한다. 다만, 올림픽, 아시안게임, 전국체육대회,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종목은 준회원단체로 가입할 수 있다.

③ 준회원단체는 준회원단체 승인일로부터 만 1년이 경과하여야 정회원단체 승격

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체육회는 승인조건 이행 여부를 반드시 심사해야 한다.
인정단체의 준회원단체 승격 경과 기간과 심의 요청 또한 같다.

<제목개정 2022. 7. 8.>

제8조(등급 및 가입심의) ① 체육회는 정회원단체, 준회원단체, 인정단체의 가입요건을 매년 심의한다.

② 등급심의를 별도의 등급심의기구를 구성하여 심의한다.

③ 심의기구는 가입요건 및 사업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한다.

④ 등급 및 가입심의에서 정회원, 준회원, 인정단체가 제4조, 제5조, 제6조의 가입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해당 단체가 된다.<개정 2022. 7. 8.>

⑤ 체육회는 등급 및 가입심의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자체 심의 회의체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. <제목개정 2022. 7. 8.>

제9조(탈퇴요청 및 제명) ① 종목단체가 정관 제10조제2항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한 경우 체육회는 해당 단체를 탈퇴하게 하여야 한다.

② 체육회 정관 제9조에 의거 관리단체로 지정된 단체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날로부터 2년간 관리단체 지정해제가 되지 못한 경우 체육회는 해당 단체를 제명시킨다.

③ 체육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단체에 대하여는 정관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.

1. 회원의 가입요건을 상실하여 종목단체로서의 존속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곤란한 경우
2. 종목단체가 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체육회 정관, 규정, 지시사항을 위배하여 종목단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

- 3. 임원 간의 분쟁, 재정악화, 집행부 부재 등의 사유로 종목단체로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
 - 4. 체육회 위상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체육발전을 저해하는 종목단체인 경우
- ④ 종목단체가 해산한 경우 체육회의 회원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.

<제목개정 2022. 7. 8.>

제10조(탈퇴신청) 회원단체가 체육회 정관 제10조제2항에 의해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- 1. 탈퇴원서
- 2. 탈퇴이유서
- 3. 탈퇴를 결의한 대의원총회 회의록

<제목개정 2022. 7. 8.>

제11조(규정의 개정) 이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체육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<제목개정 2022. 7. 8.>

제12조(구체육회 규정의 적용) 체육회는 회원단체에 한하여 가입 탈퇴 규정의 가입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 <본조신설 2022.7.8.>

부 칙(2021. 12. 06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광진구체육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2. 02. 10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광진구체육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2. 7. 8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광진구체육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